



# 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알림

- 1. 관련 : 「축산법」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
- 2. 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」 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-102호)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\* 동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-행정규칙 검색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-국민소통-법령정보-훈령·예규·고시에서 검색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」 고시 개정 전문 1부.  
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#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소속기관(농을), 산하기관(농방), 중앙행정기관(19부, 4처, 19청, 2원, 7위원회), 전국 시도 및 시군구, 축산 관련 단체, 소비자단체

주무관	이병길	사무관	한병윤	축산유통팀장	전결 2023. 12. 27. 서정호
-----	-----	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축산유통팀-3637 (2023. 12. 27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372 팩스번호 044-868-3966 / [timetostart@korea.kr](mailto:timetostart@korea.kr) / 대한민국 공개